

#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23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12월 21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대상 중 이미 개정·공포된 조례를 삭제하고, 조례안 제출 이후 제·개정된 사항을 추가 정비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2021년에 이미 개정·공포된 2건의 조례를 삭제함(안 제4조, 안 제 57조).
- 조례안 제출 이후 제·개정된 3건의 조례를 추가로 정비함.

##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를 삭제하고, 안 제5조부터 안 제56조까지를 각각 안 제4조부터 안 제55조까지로 한다.

안 제57조를 삭제하고, 안 제58조부터 안 제81조까지를 각각 안 제56조부터 안 제79조까지로 한다.

안 제82조를 안 제80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0조(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감안하여” 를 “고려하여” 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허위의 신청” 을 “거짓 신청” 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1호 중 “허위” 를 “거짓” 으로 한다.

안 제83조부터 안 제123조까지를 안 제81조부터 안 제121조로 한다.

안 제122조와 안 제123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제122조(「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 을 “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한다.

제123조(「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감안하여” 를 “고려하여” 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례안	수정안
<p>제4조(「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제1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</p> <p>제5조 ~ 제56조 (생략)</p> <p>제57조(「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7조제1항제10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</p> <p>제58조 ~ 제81조 (생략)</p> <p>제82조(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8조제1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</p> <p>제83조 ~ 제123조 (생략)</p>	<p>&lt;삭제&gt;</p> <p>제4조 ~ 제55조 (제정안 제5조부터 제56조까지와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제56조 ~ 제79조 (제정안 제58조부터 제81조까지와 같음)</p> <p>제80조(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8조제1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</p> <p>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허위의 신청”을 “거짓 신청”으로 한다.</p> <p>제23조제2항제1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</p> <p>제81조 ~ 제121조 (제정안 제83조부터 제123조까지와 같음)</p> <p>제122조(「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8조제2항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</p> <p>제123조(「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2조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</p>
<신설>	제122조(「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<신설>	제123조(「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 
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 
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각각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가  
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 
개정)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  
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
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허위 또는 거짓증언”을 “거짓증언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의  
개정)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감정노동 종사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”를 “감정노동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”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출석을”을 “출석으로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·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”를 “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”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호 중 “구거(도랑)부지”를 “도랑부지”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13조(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단서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제5호 중 “개폐”를 “개정·폐지”로 한다.

제14조(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“자산관리과장”을 각각 “재산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하천관리과장”을 “치수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제39조의2제5항 중 “자산관리과”를 “재산관리과”로 한다.

제91조제1항제1호나목 중 “그 밖에 허위서류의”를 “그 밖의 거짓서류”로 한다.

제15조(「서울특별시 공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정보공개정책과”를 “정보공개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정보공개정책과장”을 “정보공개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허위, 변조”를 “변조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16조(「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”를 “시민이 하도급 부조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”로 한다.

제17조(「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18조(「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19조(「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



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4호 중 “허위사실”을 “거짓사실”로 한다.

제20조(「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21조(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허위로”를 “거짓으로”로 한다.

제22조(「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쌍방”을 “양쪽”으로 한다.

제23조(「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각각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24조(「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25조(「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6조(「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27조(「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28조(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단서 중 “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”를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”로 한다.

제29조(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바목 중 “절사하여”를 “버리고”로 한다.

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30조(「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허위진술 또는 허위증명서류”를 “거짓진술 또는 거짓증명서류”로 한다.

제31조(「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 중 “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”를 “정보에 접근하기 쉽게”로 한다.

제32조(「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33조(「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단서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34조(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3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35조(「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 중 및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하고, 같

은 조 제5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36조(「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용이하계”를 “쉽게”로 한다.

제37조(「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“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”를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”로 한다.

제38조(「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사무”로 한다.

제39조(「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허위로”를 “거짓으로”로 한다.

제40조(「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41조(「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42조(「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2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43조(「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44조(「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중 “허위라는”을 “거짓이라는”으로 한다.

제45조(「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6조(「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단서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47조(「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

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쌍방은”을 “모두는”으로 한다.

제48조(「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“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”를 “적합하지 않다고”로 한다.

제49조(「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0조(「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”를 “적합하지 않다고”로 한다.

제51조(「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52조(「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”로 한다.

제53조(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제8호 중 “허위로”를 “거짓으로”로 한다.

제54조(「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55조(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 중 “용이하게”를 “쉽게”로 한다.

제56조(「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용이하게”를 “쉽게”로 한다.

제57조(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25조제5항 단서 중 “전임자의 잔임 기간”을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6항 중 “강사료 지급기준”을 “강의료 지급기준”으로 한다.

제58조(「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

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호 중 “용이한”을 “적합한”으로 한다.

제59조(「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단서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60조(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으로 신고하거나”로 하고, 제13조 중 “허위 그 밖에”를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1조(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2조(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회무를 통할하며”를 “사무를 총괄하며”로 한다.

제63조(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



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제2호 중 “용이한”을 “쉬운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7호 본문 중 “개폐기능”을 “열고 닫는 기능”으로 한다.

제64조(「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허위”를 각각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65조(「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66조(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제3호 중 “허위이거나”를 “거짓이거나”로 한다.

제67조(「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으로 신고하거나”로 한다.

제9조 전단 중 “허위나 그 밖에”를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8조(「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의

개정)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69조(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항 및 제7조제2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각각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70조(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허위기재하여”를 “거짓기재하여”로 한다.

제71조(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제1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이나”로 한다.

제72조(「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3항 후단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73조(「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”를 “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”로 한다.

제74조(「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75조(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각각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76조(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회무를 통할한다”를 “사무를 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77조(「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”를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”로 한다.

제78조(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 중 “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”을 각각 “보조표지를 잘 보이게”로 한다.

제25조제4항제1호 중 “용이한”을 “쉬운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“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”을 “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잘 보이는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2제3항제3호 중 “CCTV감시가 용이하고”를 “CCTV로 감시하기 쉽고”로 한다.

제79조(「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쌍방은”을 “모두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쌍방”을 “양쪽”으로 한다.

제80조(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허위의 신청”을 “거짓 신청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1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81조(「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”를

“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82조(「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83조(「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”을 “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단서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84조(「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허위,”를 “거짓이나”로 한다.

제11조 전단 중 “허위의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85조(「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
정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허위공적”을 “거짓공적”으로 한다.

제86조(「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87조(「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4호 중 “허위사실이나”를 “거짓사실이나”로 한다.

제88조(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4조의4제5항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89조(「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허위의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90조(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91조(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중 “통할하고”를 “총괄하고”로 한다.

제26조, 제29조, 제32조, 제35조, 제38조, 제42조, 제45조, 제48조, 제51조, 제54조, 제56조제3항, 제58조, 제65조, 제69조, 제72조, 제75조, 제78조, 제81조, 제84조, 제87조, 제90조, 제93조, 제96조, 제99조, 제102조, 제105조, 제111조, 제114조, 제117조 및 제120조 중 “통할하며”를 “총괄하며”로 한다.

제124조제6호 및 제127조제7호 중 “개폐”를 각각 “개정·폐지”로 한다.

제92조(「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홍보가 용이하다고”를 “홍보에 적합하다고”로 한다.

제93조(「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3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94조(「서울특별시 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홍보물·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시민소통담당관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95조(「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

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허위 또는”을 “거짓으로 신고하거나”로 한다.

제10조 전단 중 “허위나 그 밖에”를 “거짓이나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96조(「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제5호 중 “정원의 개폐”를 “정원의 개정·폐지”로 한다.

제97조(「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스마트도시정책관”을 “디지털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98조(「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기관를”을 “기관을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제10조”를 “제1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업무를”을 “업무의”로 한다.

제99조(「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공공개발기획단장”을 “공공개발기획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“공공개발기획단”을 “공공개발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공공개발기획단장”을 “공공개발기획담당관”으로 한



다.

제100조(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남북협력담당관”을 “남북협력과장”으로 한다.

제101조(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가목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대외협력담당관”을 “대외협력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“국제교류담당관”을 “국제협력과장”으로 한다.

제102조(「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스마트도시정책관”을 “디지털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103조(「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”를 “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 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04조(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수임기관란의 “동부·중부·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”을 “동부·중부·서부·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”으로 한다.

제105조(「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경제정책실장”을 “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106조(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법 제11조”를 “제11조”로 한다.

제107조(「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민소통담당관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각각 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시민소통기획관”을 “홍보기획관”으로 한다.

제108조(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주민세 재산분”을 “주민세 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제109조(「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
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생활안정금”을 “생활지원금”으로 한다.

제110조(「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도시계획국장”을 “디자인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111조(「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3호 중 “시민건강국장”을 “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112조(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스마트도시정책관”을 각각 “디지털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스마트도시정책관”을 “디지털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스마트도시정책관”을 “디지털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113조(「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가족담당관”을 “아동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14조(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권익보호담당관”을 “업무담당 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15조(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디지털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116조(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 본문 중 “공원녹지사업소”를 “공원여가센터”로, “공원녹지사업소장”을 “공원여가센터소장”으로 각각 한다.

제117조(「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제4조의2를”을 “제4조의3을”로 한다.

제118조(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3호 중 “신성장산업기획관”을 “경제정책실장”으로 한다.

제119조(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“소상공인정책담당관”을 각각 “소상공인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20조(「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시민소통담당관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21조(「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제2호 중 “환경에너지기획관”을 “환경기획관”으로 한다.

제122조(「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23조(「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